



# 홈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저작권 해설

##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장진숙  
02-3704-9478  
[jschang@korea.kr](mailto:jschang@korea.kr)

\* 비영리적인 용도를 위하여 이 내용을 인용,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올바른 저작권 문화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

온라인 세상은 공유를 통한 확산을  
기본철학으로 하고 있지만, 원치 않는 나눔을  
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유의 윤리, 그리고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I. 저작권법 개요



## 1. 저작물



### 저작물의 예시

- 어문,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
- 홈페이지 디자인 · 이미지
- 신문기사 · 기고문 · 칼럼
- 보고서 · 홍보물 · 간행물 · 카탈로그
- 인터넷 게시 의견 또는 댓글
- 뉴스 · 드라마 · 영화 · 광고영상 · UCC 등 영상물
- 다만, 신문기사 중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부고, 인사,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의 경우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함(저작권법 제7조제5호)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인사별령, 부고기사, 주식시세 등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건사고 기사 등

## 2. 저작자



- 원칙 : 자연인
- 업무상저작물 : 법인 · 단체 등의 기획하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창작물
- 공무원이 업무상 작성한 보고서 · 홍보물 · 홈페이지 디자인 등의 저작권자는 국가가 되며, 신문기자가 작성한 신문기사 및 업무상 촬영한 사진 등은 신문사가 저작권자가 됨

## 3. 저작권(인격권 & 재산권)과 저작인접권

- 저작인격권 :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 저작재산권 :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
- 저작인접권 :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있어서 자본 투자 및 창의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 실연자(배우 · 가수 · 연주자 · 지휘자 등), 음반제작자(SM엔터테인먼트 · 양군 기획 등), 방송사업자(KBS · MBC · SBS 등)

※ 저작자에게는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가 부여되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며,

-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든거나(외국 저작물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경우 포함)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 또는 업로드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
- ▶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락 없이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

## 4. 저작권의 발생 및 보호기간



### ■ 권리 발생

-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아니함
- ▶ 즉,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 등록 · 납본 · 기탁 등의 절차 필요 없음

### ■ 저작권 보호기간

- 원칙 :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망 후 50년
- 업무상저작물 : 공표된 때로부터 50년
- ▶ 저저작자 사망 후 50년 또는 업무상 저작물 공표 후 50년이 경과한 경우 보호기간 소멸로 허락 없이 이용 가능

## 5. 침해구제



### ■ 원칙 : 저작권 침해를 당한 사람은 민사 및 형사상 구제 가능

- 민사 구제 : 침해예방, 침해정지,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등 청구
- 형사 구제 :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친고죄)

\*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II. 홈페이지와 저작권



### 1.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 방법



#### 인용

##### ■ 신문기사 · 기고문 · 칼럼

- 저작권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을 두고 있는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이용 가능

- ①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 ②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양적 · 질적으로 주종 관계가 성립하여 분명하게 구별될 것)
- ③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 기고문 작성 시 나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문기사 또는 책의 일부분을 인용하는 경우, 언론사가 보도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위하여 관련 영상 등의 일부분을 이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

#### CCL마크\*가 부착된 저작물 이용

##### ■ 저작권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즉 저작권자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줄임말인 CCL은 '저작물이용허락표시'라는 뜻으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 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제도임

#### 자유이용사이트 이용



##### ■ 자유이용사이트

(freeuse.copyright.or.kr)에서는 보호기간이 소멸한 저작물, 기증된 저작물 등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동 사이트에서 검색 후 이용

#### 링크

■ 현행법상 '단순링크' 와 '직접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프레임링크', '임베디드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홈페이지에 신문기사 등 게재 시 '단순링크' 및 '직접링크' 방식이 바람직

링크 방식	예시	합법여부
-------	----	------

단순링크  
(simple link)  
링크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홈페이지(메인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



합법

직접링크  
(deep link)  
원하는 정보페이지의 주소를 직접 연결, 해당 하위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



합법

프레임  
링크  
(frame link)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 내용처럼 보이도록 연결하는 링크



불법

임베디드  
링크  
(embed ded link)  
홈페이지 내부에 음악, 동영상 등(플래시 포함)의 파일을 홈페이지 내부에서 링크를 걸어 실행 시키는 방식



불법

\* 상기 예는 이해를 돋기 위해 만든 샘플입니다.

## II. 홈페이지와 저작권



### 이용허락 받기

- 아래와 같이 해당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단체에서 관리하지 않는 저작물의 경우 개별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분야	단체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음악저작물 (작사, 작곡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660-0400	www.komca.or.kr
음악실연자	한국음악실연자 연합회	745-8286	www.fkmp.kr
음반제작자	한국음원제작자협회	711-9731	www.kapp.or.kr
어문저작물 일반	한국문예학술 저작권협회	508-0440	www.copyrightkorea.or.kr
어문저작물 (복사, 전송)	한국복사전송권협회	2608-2036	www.copycle.or.kr
영화저작물 (전송)	한국영화제작가협회	2267-9983	www.kfpa.net
공공기관의 디지털콘텐츠	한국콘텐츠진흥원	3153-1114	www.kocca.kr
온라인상 뉴스저작물	한국언론재단	2001-7114	www.kpf.or.kr

- 인터넷 포털 등에서 쉽게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는 SW(freeware/shareware)의 경우에도 이용허락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



### 법정허락

-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저작재산권자를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을 수 없는 경우, 보상금을 공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탁)의 승인을 받아 이용 가능(다만, 외국저작물 제외)

\*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함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주소 등을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등을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 법정허락 관련 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  
(☎ 02-2660-0041~0044)

## II. 홈페이지와 저작권



### 2. 저작물 이용시 주의사항



#### 공익 · 홍보 · 비영리 목적의 이용

- 저작권법에서는 공익 · 홍보 · 비영리 목적의 저작물을 이용을 저작권 침해 면책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공익 · 홍보 ·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상기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신문기사 등의 이용

-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권자로 보고 있으므로,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된 기사라고 하더라도 해당 신문기사의 저작권은 신문사로 귀속되므로 사전에 이용허락 필요
- 다만, 각 과에서 제출한 보도자료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 기사로 기자의 창작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제출된 보도자료를 있는 그대로 기사화했거나 기자가 단순 편집만 했다면) 해당 기사의 저작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볼 수 있으므로 허락 없이 이용 가능
- 또한, 신문기사에서 장관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 장관의 발언 부분은 허락 없이 이용 가능

#### 일부분의 이용

- 저작물의 일부분(예컨대, 5분짜리 음악을 30초 이용하거나 영화의 특정 장면을 캡처하는 경우)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권리자의 허락이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출처표시로 인한 면책 여부

- 저작권법에서는 출처 표시를 저작권 침해 면책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음
- 즉 출처를 표시했다고 하여 합법적인 이용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외국저작물의 이용

- 우리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고 있으므로, 외국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함
- 따라서 외국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함

#### 홈페이지를 제3의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

- 홈페이지를 제3의 업체에 외뢰하여 제작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자에게帰속되므로, 양도를 받고자 할 경우 당초 의뢰 시 계약서상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홈페이지 운영자(의뢰자)는 홈페이지의 배경화면 등에 합법적인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홈페이지 제작자에게 주지시키고,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제작자가 지도록 문서로 명확히 해야 함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창작된 저작물의 이용

-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데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해당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
- 정부가 작성한 정부 간행물 또는 보고서 등을 외부에 배포 또는 이용허락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고자 할 경우, 동 간행물 등에 '간행물 작성용'으로만 권리자로부터 허락받은 저작물이 포함되어있다면, 외부 배포 또는 이용허락, 인터넷 게재 등을 위한 용도까지 허락을 받아야 함
- 따라서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을 경우 향후 이용행위(직접 이용 · 외부 허락 · 인터넷 게재 등)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